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응 매뉴얼

fashion
패션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응
매뉴얼
fashion
패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응 매뉴얼

fashion
패션

성폭력 대응 매뉴얼

fashion
패션

| | |
|-------------------------------|-----------|
| I.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 4 |
| II. 패션 분야 성폭력 현황이 어떠할까요? | 11 |
| III. 패션 분야 성폭력 피해, 무엇이 고민인가요? | 16 |
| IV.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 27 |
| V. 성폭력 예방과 대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41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45 |

I.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상대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은 물론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폭력도 포함됩니다¹⁾.

¹⁾ 여성가족부, 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pp. 13-15.

문화예술 분야 일면



▷ 예술적 행위 및 업무와 개인의 성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속사에서 체형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체특징과 관련된 표현이나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의상 피팅을 이유로 모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등

▷ 어릴적부터 관련 직종의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재능뿐 아니라 오랜 시간 기량을 닦아야 되는 경우 등
- 음악, 미술 등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인의 경우도 청소년 연습생으로 시작하는 경우 등

▷ 안정적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일이 인맥 위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형 음반 유통업자는 소수이고, 이들과의 회식 등을 거절할 경우 음반발매를 위한 기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 모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패션쇼가 그리 많지 않으며, 디자이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무대에서의 기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가 각종 시상식이나 오디션, 패션쇼 모델선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들에게 가수나 모델을 선발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 등
-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소수가 문학지나 만화잡지의 편집위원이나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신예 만화가의 작품을 심사하는 경우 등

▷ 일대일, 혹은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이나 업무가 있습니다.

- 작곡가와 가수, 만화작가와 어시스턴트, 디자이너와 모델, 작가와 피디 등 일대일 혹은 일대 소수와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특성



문화예술 분야의 일면으로 인해 성폭력이 야기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권력적 위계구조 하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 ‘예술가가 되려면 성적으로 탈선해 봐야 한다’ 등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영화촬영 현장에서 사전협의를 내용과 다르게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랜 시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우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어도 경제적 여건이 불안하여 소송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권력은 고용관계로 정형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이 경력, 인맥을 통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성폭력 가해자들 안에서의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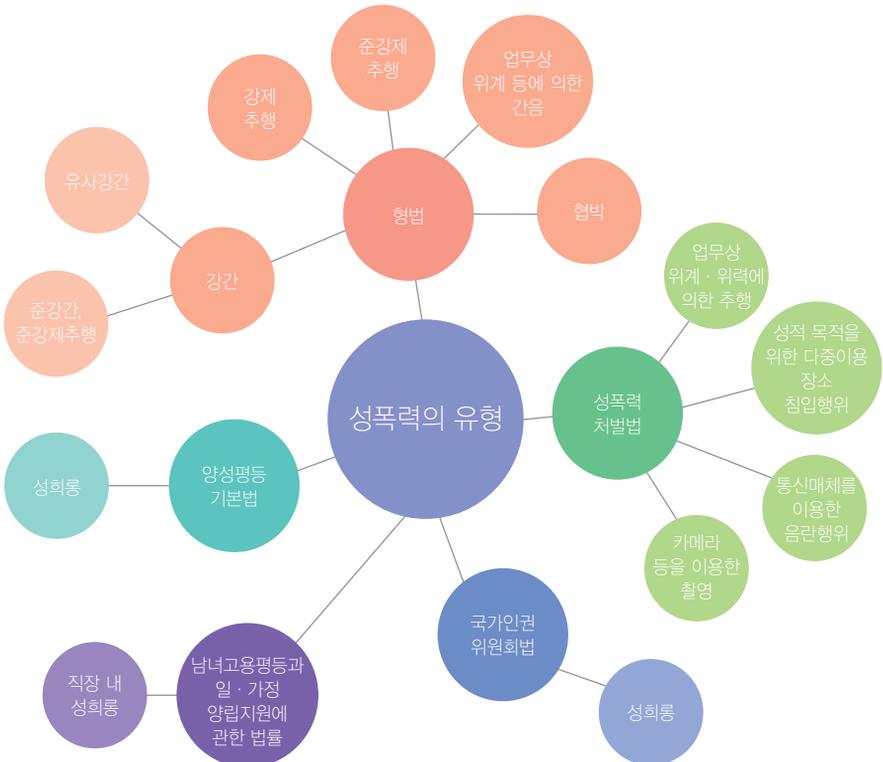
▷ 일대일,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으로 인해 일신전속적 관계 하에서 상급자에게 더 종속되므로 상급자의 지시 및 명령을 하급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를 의미합니다.²⁾

²⁾ 조혜련, 2017,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p. 16.

2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적용법조)

행위

강간(형법 제297조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형벌이 동일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을 차별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와 구제를 실시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성희롱의 사례

→ 법원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시

※ 허리에 손 두르기과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등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 “술집여자들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OO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 드려” 등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 성기 모양으로 조각한 당근을 개수대에 담가놓은 행위,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등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유포(재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을 한지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 직장 내 탈의 시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협박(형법283조) : 유포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인 간 이별 시 또는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별 후 협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방조 및 협력 (정보통신망법42조, 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등 행위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적용)를 의미합니다.

3 2차 피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 등에 의해서도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할까요?

II. 패션분야 성공포력 현황이

성폭력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아

성폭력 피해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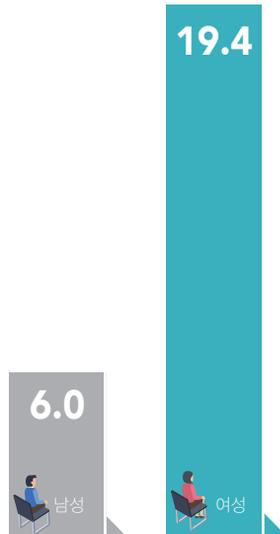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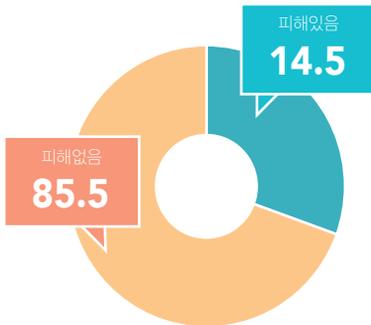
성폭력 피해

패션 분야 종사자는 약 14.5%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여성 성폭력 피해 **19.4**

성별 성폭력 피해율

이 중 여성의 피해는 19.4%, 남성은 6.0%로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높습니다.



성폭력 유형 중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피해 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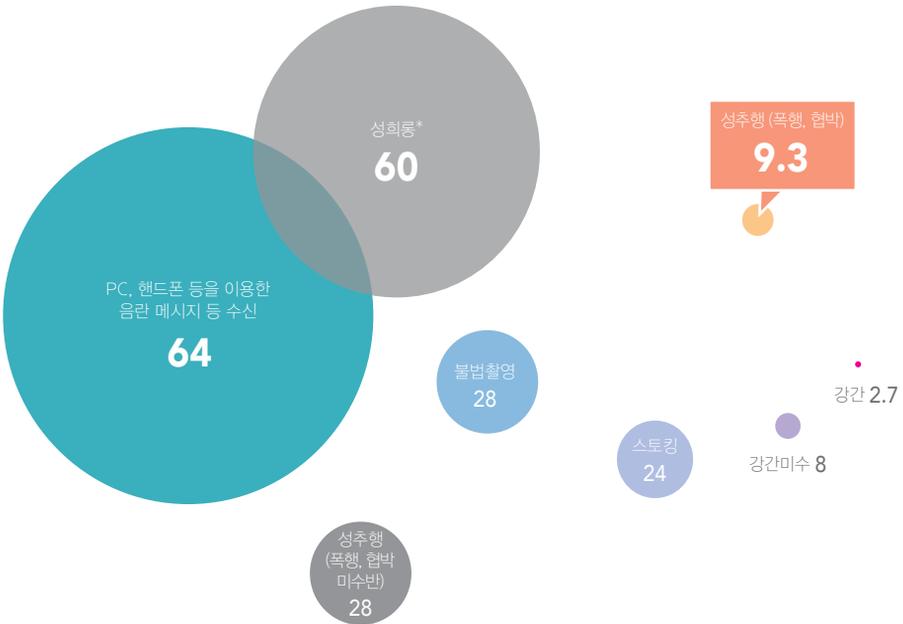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등 피해

64

성폭력 유형별 피해실태(중복응답)

패션 분야 종사자들의 성폭력 피해유형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피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고,

성희롱의 비율은 60%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비율도 28%로 그 피해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희롱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여 '참았다'는 비율이 33.3%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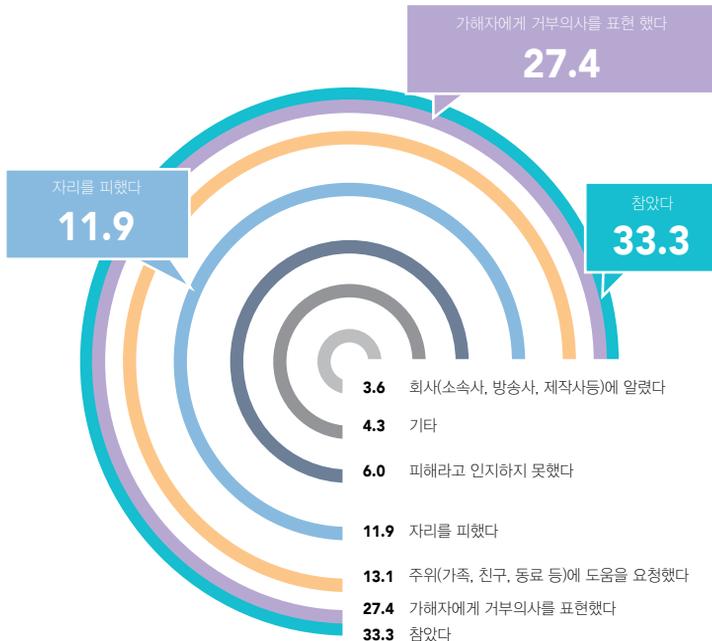
참았다 **33.3**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현 했다 **27.4**

성폭력 피해 대응

패션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들은 '참았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현 했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으며, 주위(가족, 친구, 동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율은 13.1%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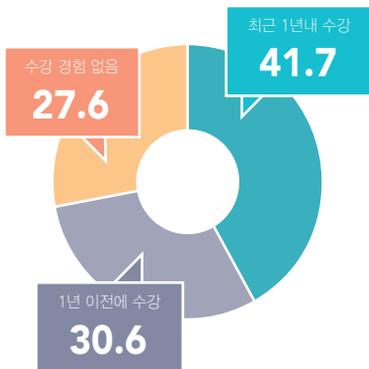


최근 1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41.7%에 불과

1년간 이수율 **41.7**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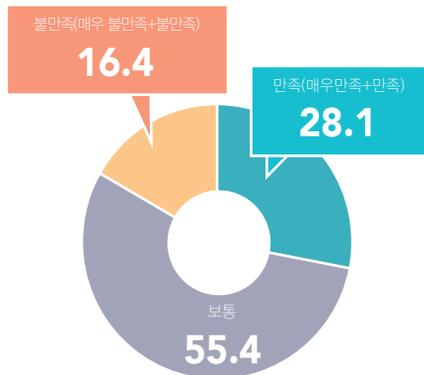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패션 분야 종사자들은 지난 1년간 이수율이 41.7%로 나타났으며, 그 이전에 수강한 비율은 30.6%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27.6%로 높았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 비율 **28.1**

성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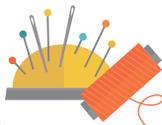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수강경험이 있는 패션 분야의 종사자들은 약 28.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족도 높은 성폭력 교육을 위해서는 패션 분야 종사자의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Ⅲ. 패션 분야 성폭력 피해, 무엇이 고민인가요?

Q1

**패션쇼를 위해 사전 피팅 작업 시
성희롱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력이 없는 모델들은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 잘 대처하기 어려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쇼 무대에서는 잘 없지만 패션쇼를 위해 모델이 선택이 되면 디자이너의 솜으로 의상 피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우 재는 맛없게 생겼어, 재는 가슴이 없어... 혹은 재는 쥐도 안 먹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거 자체가 상처인데, 경력이 짧은 입장에서 말을 하기도 힘듭니다.



A 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심리적인 상처에서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전문가 디자이너 솜에서 의상 피팅을 하면서 상당한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없거나 짧은 모델의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를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델의 입장에서 무례한 언어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심리적인 상처에서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 덜 부담스럽고 소극적인 저항방식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발생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심리 상담을 받으신다면 보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없이 단순히 경멸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한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언어적 수단에 한하지 않고 문서, 거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례에서 언급하는 일련의 언행은 언어수단에 의하여 약자의 입장에 처한 모델들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행위를 목격해야 합니다. 이 때 목격자는 1인이어도 무방하나 해당 1인은 외부에 이러한 모욕행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라 함은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 언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에 디자이너의 지인이라거나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언행을 굳이 숨길 이유

가 없으므로 쉽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히 모욕한 상황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2

행사장에서 모델의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할 까봐 두렵습니다.



레이싱 모델입니다. 경기장 특히 모터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팬으로 또는 기자로 가장하여 신체의 특정부위를 불법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각될 경우 필름을 압수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발각되지 않고, 관련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할 수 있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또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올지 모르니깐 더 불안합니다. 모터쇼 행사장에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이 한 곳에서 매번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팬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공유를 해주는 것이 저와 같은 모델에게는 홍보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되지만, 특정부위만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팬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A 2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담전문가 귀하의 직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동의하지 않는 촬영이 이루어지거나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레이싱모델을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적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각되면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현행법 체계 안에서 조치가 되겠지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소속사의 모델 보호규정을 검토하고, 모델 활동 현장의 보호를 요청하고, 개인홍보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사진촬영이 허락된 자 외의 촬영은 거절하는 표현을 하고(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료들과 정보를 나누고 비공식적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의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촬영과 유포에 대한 공통 고민은 ‘완벽한 삭제’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의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www.cyber-lion.com), DS0: 디지털성범죄 아웃(www.dsoonline.org)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휴대폰카메라 등 포함)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위 법 제14조 제2항), 나아가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 판매, 제공, 전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촬영을 대상자인 모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 해당 사진을 유상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3항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3

디자이너와의 은밀한 관계 요구를 거절하니 일이 끊겼습니다.



10년 동안 모델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 모델입니다. 남성 디자이너가 피팅을 하자고 해서 피팅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주물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주 보았던 디자이너 선생님이라 큰 부담감 없이 손을 주물러 주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몸 만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부감이 없는지”를 저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모델을 계속해야 하었기에 정색하지는 못하고 “일적으로 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안 좋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자이너는

알겠다고 하면서 바로 수금을 하였고, 생각이 바뀌면 전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쇼 무대에 서기로 예정되어 있던 일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3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대응하면서 고용노동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전문가 디자이너의 제안은 매우 성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남성디자이너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상대에게 성적인 사이가 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입니다.

더욱이 이 남성디자이너는 상대의 성적 지향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도 일로 압박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대응하면서 고용노동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 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까지 만지거나 만지게 한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면 이 행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업계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존부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요구는 당연한 기본권으로 모델업계 종사자들이 단합하여 쇼호스트에게 요구하여 얻어야 할 권리입니다.

Q 4

동성과의 관계를 요구하는 디자이너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성 모델입니다. 피팅 후에 남성 디자이너가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메인을 세워 주겠다고 하니 디자이너가 있는 몇 년 동안 계속 본인의 무대에 세워 주겠다고 하면서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선배 모델들 중에는 이를 거절해서 모델을 그만 둔 분도 있고, 디자이너의 메인으로 잘 나가는 선배도 있습니다. 저도 관계를 수락하면 모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겠지요. 메인으로도 설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성간이면 지금까지 쌓아 온 것도 있고, 눈 딱 감고, '뭐...할 수 있겠다' 하겠는데, 같은 남자이면... 그렇다고 저는 이걸 신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송이나 언론을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냥 저도 제의를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이것지요. 거절할 경우 모델을 그만뒀야 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울 거 같습니다. 거절한다면 저 자신에게 부끄러움은 없지만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A 4 디자이너가 모델들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한 선배들과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는 용기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문가 현재 귀하는 모델 활동에 있어 나름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을 거절할 경우 직업을 바꿔야 할 정도라면 갈등이 크겠습니다. 남성디자이너가 '관계를 요구한다.'는 말은 성적인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디자이너의 제안에 당황하셨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모델들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한 선배들과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는 용기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관계자들이 이익을 제공하는 미끼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단은 지금도 실천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환경도 외부에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러내 말하기를 선택한 동료들에게 미투나 위드유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말이 모이면 그 힘으로 체계가 바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

디자이너의 성관계 요구는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에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으로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수락, 거절 이전에 디자이너가 이미 그러한 요구를 한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를 수락하여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5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느 날 후배모델이 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남자 디자이너 선생님이 남성 수영복 피팅을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후배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모델이 함께 피팅을 하러 갔었습니다. 피팅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갑자기 수영복 안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었고, 정말 당황했고, 불쾌했지만 그냥 있었답니다. 같이 간 다른 모델들도 불쾌하지만 서로 간에 쉬쉬하면서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후배는 정말 고민스러워 하면서, 이러한 성추행이 없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마침 저는 그 디자이너랑 친분이 있었기에 따로 불려서 모델들에 대한 터치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디자이너는 “안 만졌어, 그냥 피팅법 가르쳐 줬어.”라고 응대를 하고는 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저에게 상담을 한 사람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모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지 참 난감합니다.



A 5 목격자들의 진술을 잘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등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문가 네 매우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디자이너는 피해를 당한 분들과 주변인들의 대응 없이는 절대 성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피해자 보다는 주변인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귀하는 디자이너와 친분도 있으시고 불려서 이야기를 하실 정도의 지위나 위치가 있으시니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는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업무, 고용관계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에 있어 ‘갑’의 위치에 있음을 잘 알고 가해 행위를 했고 피해사실을 공론화 했을 때 불이익이 올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피해자 말고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잘 정리하여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의뢰인께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차적으로 디자이너에게 훨씬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협박성 발언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등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응과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해줄 상담기관과 먼저 상담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전문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등 다수).

귀하가 말한 디자이너의 신체접촉 행위로 인해 피팅모델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위와 같은 디자이너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팅모델들로서는 디자이너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이후로도 피팅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이 반복된다면 디자이너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후배인 피팅모델 및 디자이너에게 디자이너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

음을 고지하고 디자이너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피팅모델 후배들에게는 디자이너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번호사 제도 등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Q 6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투(me too) 이후로 많이 즐기는 했지만 여전히 회식 자리에서 터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데서 회식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나 소기획자가 있으면 모델들이 빨리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서 회식을 하게 되면 취기가 오르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에 팔을 얹고 만집니다. 물론 요즘은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거나 빼주고 막아주는 분위기이고, 그냥 저쪽 옆자리는 가지 마라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정색하거나 하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지고, 나 혼자 튀는 거 같고, 모두 피해 보는 느낌이 두렵기도 합니다. 회식을 매번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매번은 아니지만, 회식 때의 이런 느낌을 내가 경험하거나 당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힘이 들기는 합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면 나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A 6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세요.

상담전문가 미투(me too) 이후로 회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체감하시는군요.

귀하가 소속된 단체에서 건전하지 않은 '회식이 줄었다'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도 미투에 대한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거나 빼주고 막아주는 분위기'라면, 구성원들도 각자 최선을 다해 위드유(with you)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바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고민상담을 하기 전까지 귀하는 스스로 잘해 오셨던 방식이 있습니다.

미투와 위드유 사회적 운동 실천의 기본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이뤄진다는 취지입니다. 귀하는 이미 선배들에게 말하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귀하가 말했다 때문에 "요즘은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거나 빼주고 막아주는 분위기이고, 그냥 저쪽 옆자리는 가지 마라 한다"는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회식 장소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목격했을 때 불편감을 느끼고, 이렇게 폭로할 기회가 왔을 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도와주고 빼주고 막아주는' 방어 행동을 여러 사람이 반복하면 디자이너나 쇼 기획자가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한 후 행동이 중단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면 동료들이 공유하며 다졌던 의식들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법률전문가 부적절한(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은 법률적으로 강제추행(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을 실제로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밝히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당시에 단호하게 상대방에게 지적하고 주변인들이 모두 당시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7

식사 도중 기억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지만 언론 노출이 두려워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지속되어 괴롭습니다.



모델들도 방송에 출연하고,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해주는 기업의 대표가 식사하자고 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한잔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기억도 나지 않고, 일어나 보니 호텔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먹은 와인에 약을 탔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업대표는 사위를 하고 있었고, 전 바로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기획사와 협의해서 고소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럴 경우 언론에 노출이 되고, 저로서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적정선에서 금전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난 이미 피해를 봤는데, 고소한 들 오히려 언론에 비치는 성폭행 피해자라는 관심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라우마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겁하다고도 생각되지만 저로서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A 7 마음의 트라우마는 꼭 치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전문가 매우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겪으신 일은 법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이 100건 발생한다고 할 때 20건 정도만 고소 고발이 진행됩니다. 그중에서 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2.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트라우마는 꼭 치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인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사건화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차적인 상담을 하신 후에는 상담 전문가에게 개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 귀하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와인에 약을 태운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대표적인 암수범죄(暗數犯罪)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같이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및 성폭력 상담기관의 지원을 받아 고소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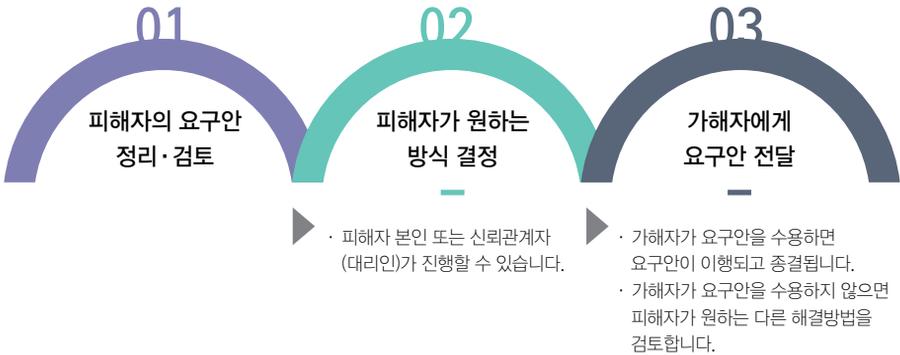
IV.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사건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사건 해결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심리적 지지, 법·의료적 지원, 가해자 처벌, 심리상담, 공론화, 소속공간의 문화 바꾸기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제시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³⁾.

³⁾ 서울특별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pp. 60-66.

1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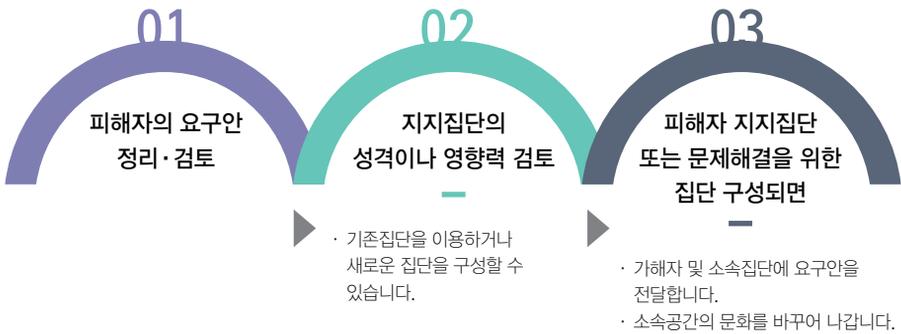
- ① 공론화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②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사건종결 가능
- ③ 요구안의 내용을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다양하게 구성 가능

단점

- ① 피해자의 대리인이 중재할 경우 1:1로 요구할 때 보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 있음
- ② 제3자의 의견이나 감정이 피해자 보다 우선시되거나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③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음

2

소속공간에서의 집단적 해결 (여직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장점

- ① 피해자가 소속공간에서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해결을 원할 때 사용 가능
- ②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압력을 좀 더 힘있게 해결할 수 있음
- ③ 소속공간(집단)의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께 할 수 있음
- ④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가능
- ⑤ 요구안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단점

- ① '공신력', '중립성' 등에 대한 담론싸움이 불거져 사건 해결 과정이 지연되고 어려워질 가능성 있음
- ② 소속집단 내의 다른 갈등이나 문제와 연루되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흐도될 수 있음
- ③ 가해자가 소속공간(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움
- ④ 가해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 강력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음

3

소속공간 안에서의 제도적 해결방법 (사규, 학칙, 협회 회칙 등)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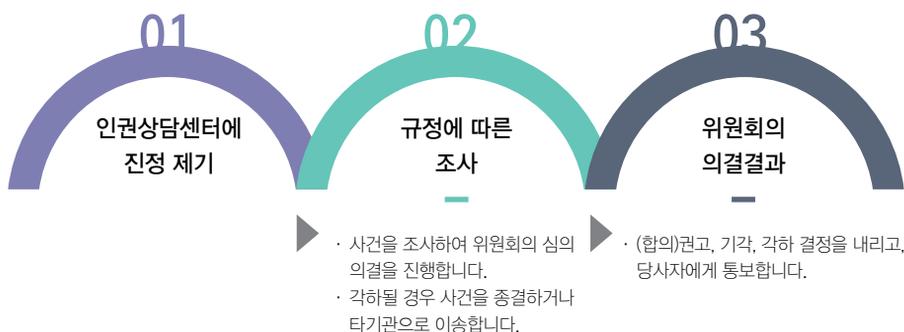
- ①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압력을 좀 더 힘있게 해결할 수 있음
- ② 형사상 처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퇴사', '퇴학' 등과 같은 징계를 활용할 수 있음

단점

- ① 가해자가 소속공간(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려움
- ②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

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장점

- ①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적 언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② 국가권력에 의한 2차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진정할 수 있음

단점

- ① 권고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음
- ②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이 각하됨

5

사법적 해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01

성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수사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

민사소송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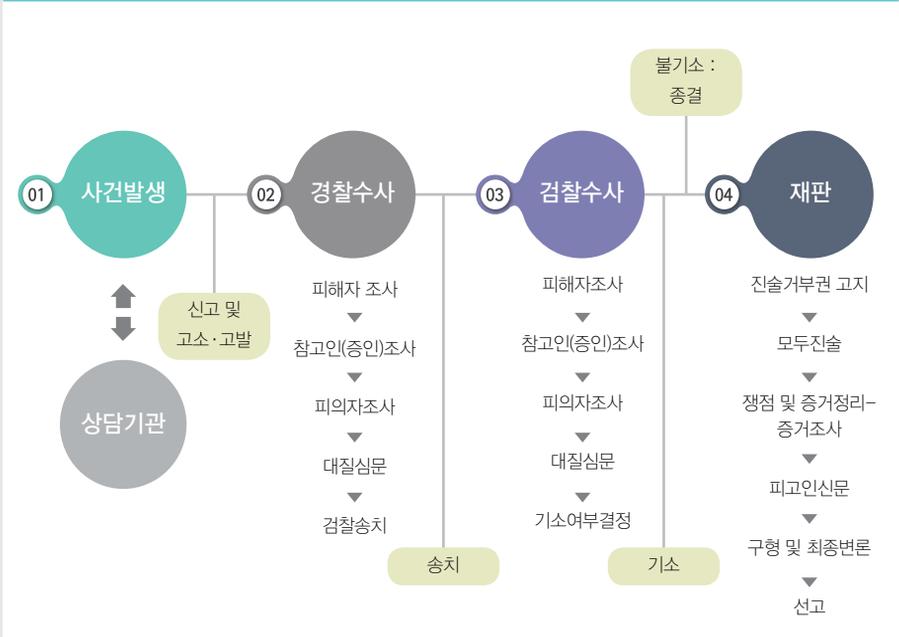
성폭력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로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과정

※ 민·형사 대응외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형사소송절차

성폭력은 범죄행위에 따라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지며,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형사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①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②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는 안도감이 크고, 이후 소속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영향력 미칠 수 있음
- ③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④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효과가 있음

단점

- ①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가 제한적임
- ② 사건 해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 변화와 상관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③ 소송에서 지거나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좌절감과 위험부담(무고피소)이 커질 수 있음
- ④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건발생

1) 신고

경찰,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소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방식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미란다를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지만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보호시설,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피해자와 함께 일상의 어려움, 신고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사법제도 외적인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며 가장 좋은 대처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 여부 검사,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전담의료기관 전국 332개소/해바라기센터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성폭력위기센터

쉼터연계

성폭력 피해자는 쉼터(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운영

기타지원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음

■ 수사단계

- ① 피해자 진술 및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기타 주변인과 CCTV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추가조사 등을 거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② 신변보호조치 요청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내용,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변보호조치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CCTV 설치, 스마트워치 (위치추적장치)지급,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등입니다.
- ③ 전담조사제
 - 경찰총장은 각 지방경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④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 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⑥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⑦ 진술조력인⁴⁾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⑧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⁴⁾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증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재판단계



- ①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이 시작됩니다.
- ②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검사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직접 재판부에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③ 판결문을 비롯한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관련 법률 용어



- 고소**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그 주체에 있어서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각각의 범죄마다 다릅니다.
-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수사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을 보내는 것입니다.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 약식기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부과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 약식기소로 처리됩니다.
- 불기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소유예** 범죄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 처벌을 요구하는 기소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무혐의)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증거불충분)를 말합니다.
- 죄가안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거나 면제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해 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소송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 각하**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고발장에 의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새로운 증거없는 불기소 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 고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며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 모두진술** 형사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음으로써 공소제기 요지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항고**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등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정신청** 항고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고소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 항소/상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상고는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V.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폭력 예방과 대책

① 문화예술 분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최근 1년내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경험은 음악 분야 35.8%, 방송 분야 36.3%, 패션 분야 41.7%, 만화 분야 24.5%로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할지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별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로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례별 접근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② 주변 지지자들과의 소통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음악 분야 종사자는 18.5%, 방송 분야 30.2%, 패션 분야 14.5%, 만화 분야 34.2%가 피해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리를 피하거나 참았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지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지지해 줄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성폭력 상담기관 등과 같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기관에서는 관련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은 물론 의료지원에 대한 안내와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및 기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안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사건 해결방법 고려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소속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사법적 해결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방법은 공론화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간에서의 집단적 해결방법은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에 비해 가해자에게 좀 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해자가 소속집단을 나가버릴 경우 다른 조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 해결방법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건 해결이 길어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해결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여 사건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4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의 노력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이후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좁기에 해당 업계에서 원활한 활동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언론에 노출될 경우 대중에 의한 2차 피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대표자(또는 관리자, 협회 회장)는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직 내 여론을 모니터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료 등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소문을 퍼트리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평소 행실, 업무 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당연히 울어야 하고, 당당할 수 없고, 유약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지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또는 피해 촬영물을 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가해자를 원망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피해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피해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피해자는 울 수도 있지만, 웃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 ◇ 상대방과 나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의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닙니다.
- ◇ 상대방은 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나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이 상대방에게는 강요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피해에서 회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강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는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전화 02-3668-0266,

02-1670-5678(내선번호 3번)

온라인 상담 [withu@kawf.kr/](mailto:withu@kawf.kr) (비공개 게시판)

홈페이지 <http://www.kawfarist.kr>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게임, 방송, 음악, 패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계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치유까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산업계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1670-5678(내선번호 1번)

온라인 상담 bora@kocca.kr

대한체육회 : 스포츠인권센터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체육인(선수 및 지도자)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02-418-1119

온라인 상담 sports119@sport.or.kr

홈페이지 <http://sports-in.sports.or.kr/>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임시보호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으로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연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17개 시도, 171개소).

전화 1366(지역번호 + 1366)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가능(카카오톡에서 'women1366' 검색,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1:1 채팅 진행

홈페이지 www.women1366.kr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합니다(2018년 기준 39개소 운영 중)

전화 02-3672-0365

(서울해바라기센터 대표번호)

온라인 상담 <http://www.help0365.or.kr/>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출 촬영물 삭제,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 02-735-8994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화 1331

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

전국 성폭력 피해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 국립, 공립병원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합니다(2018년 기준 332개소 운영 중).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담당합니다.

전화 02-735-7544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전국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132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069>

고용노동부

민간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화 1350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의제안과 대중교육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38-5801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735-7544

홈페이지 <http://www.stop.or.kr>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2263-6465

홈페이지

<http://www.hotline.or.kr>(*지역별 센터 운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신고 및 상담뿐 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35-1858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 감수하신 분

김혜정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홍수경 : 노무사

■ 도움주신 분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윤은희 : 인구보건협회대구·경북지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

윤혜영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학생상담센터장

이동민 : 이동민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은철 : 최은철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주희 : 최주희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 연구진

윤우석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훈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강지현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영주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현주 : 대경대학교 교수

홍승진 : 배우

김호중 : 가수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대응 매뉴얼_패션

발행일 : 2019년 6월

발행인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연구수행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남재열)

발간등록번호 : 11-1371000-000937-01

ISBN : 979-11-6357-081-3 (94300)

본 매뉴얼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매뉴얼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폭력이 무엇인가요?

패션 분야 성폭력 현황이 어떠한가요?

패션 분야 성폭력 피해, 무엇이 고민인가요?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예방과 대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813

ISBN 979-11-6357-081-3

ISBN 979-11-6357-076-9 (세트)



문화체육관광부